

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이병도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2417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5년 02월 03일

발 의 자: 이병도, 강석주, 김 경, 김성준, 김영철, 김원태, 남창진, 박수빈, 박승진, 박영한, 박유진, 박칠성, 서상열, 오금란, 왕정순, 유정인, 이상욱, 이상훈, 이영실, 이원형, 이종태, 이종환, 임규호, 임종국, 정준호, 최민규, 한 신, 홍국표 의원(28명)

1. 제안이유

- 스토킹 피해자의 경우 사건 조사 및 처리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정신적·신체적 피해를 입거나, 고용관계에서 불이익 조치를 받는 등 2차 피해를 겪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.
이에, ‘2차 피해’의 유형을 정의하고, ‘2차 피해 방지 규정’을 신설하여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.
- 또한, ‘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’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‘2차 피해’에 대하여 정의함.(안 제2조제5호 신설)
- 나.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를 규정함.(안 제8조제2항 신설)
- 다. 2차 피해 방지에 관하여 규정함.(안 제10조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“2차 피해”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.

가. 수사·재판·보호·진료·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 피해

나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)

다. 사용자(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,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)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

1)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

2)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
3)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
- 4)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- 5)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 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- 6)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- 7)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- 8) 인허가 등의 취소,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
- 9)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,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

제8조제1항 중 “피해자 등”을 “피해자등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스토킹 신고 접수 및 상담
2. 피해자등의 신체적·정신적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
3. 심리상담·법률·의료 등 지원
4.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거주지 이전, 보호시설 입소 연계 등 지원
5. 스토킹 예방·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
6. 스토킹과 스토킹 피해에 관한 조사·연구
7. 그 밖에 피해자등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제9조 및 제11조를 각각 제11조 및 제9조로 한다.

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0조(2차 피해 방지)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<u><신설></u></p>	<p>제2조(정의) ----- 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5. <u>“2차 피해”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.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가. 수사·재판·보호·진료·언론보도 등 스톡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·신체적·경제적 피해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나.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)</u></p> <p style="margin-left: 20px;"><u>다. 사용자(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,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)로부터 스톡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</u></p>

- 1)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
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
신분상의 불이익조치
- 2)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
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
한 인사조치
- 3)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
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
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
조치
- 4)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
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
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
의 차별 지급
- 5)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
개발 기회의 취소, 예산
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
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
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
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
취소, 그 밖에 근무조건
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
는 차별 또는 조치
- 6)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
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
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
언, 그 밖에 정신적·신

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

7)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
8) 인허가 등의 취소,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

9)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,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

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) ①
시장은 피해자 등의 보호·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다.

<신 설>

제8조(지원시설의 설치·운영) ①
----- 피해자등-----

-----.

② 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스토킹 신고 접수 및 상담
2. 피해자등의 신체적·정신적 안정과 일상회복 지원
3. 심리상담·법률·의료 등 지원
4.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한 거주 이전, 보호시설 입소 연계 등 지원
5. 스토킹 예방·방지를 위한

③·④ (생략)

제9조 (생략)

제10조(피해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)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및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, 공무원, 직접 고용된 직원 인력 등이 피해자 또는 스톡킹 사실을 신고한 사람인 경우 스톡킹으로 피해를 입은 것 또는 신고를 한 것을 이유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파면, 해임, 해고,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
2. 징계, 정직, 감봉, 강등, 승진 제한,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
3. 전보, 전근, 직무 미부여, 직무 재배치, 그 밖에 본인의 의

홍보 및 교육

6. 스톡킹과 스톡킹 피해에 관한 조사·연구

7. 그 밖에 피해자등 보호·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

③·④ (현행과 같음)

제11조 (현행 제9조와 같음)

제10조(2차 피해 방지) 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사에 반하는 인사조치

4.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

5.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,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,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자격의 취소,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

6.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, 집단 따돌림,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·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또는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

7.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

8.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조치

② 시장은 피해자의 요청이 있으면 업무 연락처 및 근무 장소의 변경, 배치 전환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.

제11조 (생략)

제9조 (현행 제11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'2차 피해'의 유형을 정의하고, '2차 피해 방지 규정'을 신설¹⁾하여 피해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도의 비용수반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스토킹 피해자 지원시설의 업무를 명확히 규정하여 비용발생의 여지가 있어 각종 자료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확인결과 기추진사업²⁾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

담 당 관 주 병 준

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

추계분석관 손 제 승

☎ 02-2180-7953

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-
- 1) 안 제2조(정의)에 현행 같은 조례 제10조(피해자등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등)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추정 시 본 개정안에 따른 별도의 추가재정소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
- 2) [기추진사업] 2025년 서울시 <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> : 929,790천원
- 스토킹 피해자 윈스톱 지원 사업은 <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사업>에 포함되어 있으며 세부금액은 638,290천원임
 - 스토킹 피해자 윈스톱지원센터의 지원내용
 - 안전지원 : 거주지 이전 지원(이사비) / 임시보호소·임시숙소 연계 / 민간경호서비스 연계 등
 - 일상회복지원 :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/ 법률자문 및 소송 지원 / 의료비, 생계비 등 연계 지원 등
 - 특화지원 : 디지털성범죄 기반 피해촬영물 온라인 삭제 지원 등
 - 스토킹 피해 실태조사 및 정책개발 연구 또한 여성가족재단(서울시 스토킹 피해자 윈스톱지원센터)에서 2024년 실시함
- 자료 : 2025년 서울시 여성가족실 예산설명서 및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여성가족재단 주요업무보고